

2022년 곤양면 자체 종합감사 결과(공개용)

우리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은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I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2. 6. 14. ~ 6. 16.(3일간)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 감사범위 : 2020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각종 지시사항 및 주요시책 추진사항
 - 세출예산 집행 및 민원처리 실태
 - 공사추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타 업무 추진에 따른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여부 등

II 감사 결과

- 지적사항
 - 가. 행정상 조치: 22건(주의 18건 / 시정 4건)
 - 나. 신분상 조치: 7명(훈계 1명, 주의 6명)
 - 다. 재정상 조치: 시정(추징·회수) 4건 / 9,850천원

Ⅲ 주요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관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비밀번호 및 보관책임자, 결재자 확인을 누락시켰으며, 담당자가 교체되었음에도 비밀번호를 변경한 내역이 기록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세출예산 통계목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구입 외에 무인경비,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1]에 따르면, 재료비는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등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6건)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공개 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하며,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분기 후 1개월 이내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사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자 미지정

-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 및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지정대리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사람이 대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출원 휴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지급명령 승인처리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이장 월정수당 지급일 미준수

-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이·통장의 지원)에 따르면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보수지급일)에 따르면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이장 월정수당을 1일 ~ 6일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다.

주민등록증 등기배송 수수료 관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5조 및 제76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같은 훈령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 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증 등기배송 수수료 14건 53,200원을 민원인으로부터 영수한 즉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수입증지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영수일로부터 1일 ~ 29일 이상 지연 납입하는 등 수수료 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장 임명사항 관리 부적정

-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는 “이·통장

의 임기가 만료된 마을에서는 임기만료 10일 전에 마을회에서 선정된 후보자를 읍·면·동장에게 추천한다.” 라고 되어 있고,

-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에는 “읍·면·동장은 마을회에서 2사람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임명한다. 단, 마을회의 추천이 없거나 마을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마을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이·통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력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을 임명한 때에는 임명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 이장 임명 사항을 관리하면서, 임명권자인 곤양면장의 임명없이,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임명절차를 누락한 채 이장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장의 신규임용에 따른 위·해측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만 시에 임명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업무 소홀

-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채용)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하며 채용 전 반드시 인사부서의 사전협의 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 또한, 근로자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생략하거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인사부서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채용공고 절차를 생략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반환 안내 및 회수 소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

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8조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날 등록된 장애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며,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장애인 사망 정보에 따라 사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사망한 장애인이 가족 등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장애인등록증에 대한 반환을 안내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등록장애인 중 사망자에 대하여 부당 사용이 없도록 사망한 장애인의 가족 등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안내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후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망자 11명에 대하여 반환 안내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애인등록증을 미회수하는 등 사망 장애인등록증 반환 안내 및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등록장애인 재진단 및 재판정관리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 위 규칙에 따라 장애인 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해당 장애인의 재진단(판정)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여 자료제출 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진단기한 1개월전에 재판정 촉구를 통지하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수감 대상기간 중에, 장애인 등급 재판정 통보를 함에 있어 재진단 기한 3개월 전에 장애인등급재판정통보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여 통지하였고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지연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등록장애인 재진단 및 재판정 관리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경로당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소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1항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정산검사)에는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관리 지침」에는 보조금 집행 원칙에 보조금 집행 시 지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하며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 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0년~2021년 경로당 보조금 정산을 함에 있어 물품 구입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카드 지출한 후 현금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있으며 통장에서 인출한 날짜와 사용 내역 영수증일자가 불일치한 적이 있고 영수증을 미첨부하거나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등 경로당 냉난방비 및 운영비 정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업무 소홀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증명서류를 갖추어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면제 대상자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읍·면·동장 내부결재(승인)을 거쳐 면제여부를 결정·통보하게 되어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1년 1건, 2022년 2건의 교육훈련 면제 처리를 하면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내부결재를 통해 면제여부를 결정·통보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업무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자연훼손’, ‘개명·생년월일·성별 변경’, ‘주소변경란 부족’, ‘영주귀국’, ‘재해로 인한 외모변경’, ‘말소자의 귀국’으로 인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에는 ‘2006. 11. 1. 이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에 따라 2006년 당시 주민등록증에 형광인쇄기술을 추가하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경신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증 경신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만, 민원지적과에서 17653호(2017.8.21.)로 시달한 지침「2006.11.1. 이전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 부과기준 안내」에 따르면 구 증을 미반납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할 11건에 대하여 무료로 발급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고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 또한, 「주민등록 사무편람」 “전입세대 열람 입증자료” 에 따르면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신청인에 따라 입증자료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 면제 적용이 가능한 경우” 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 또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위임받은 사람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수수료 면제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발급신청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전입세대 열람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리고 같은 편람에 따르면 신청인은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 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 등을 확인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의 확정일자 부여 사실로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나 입증자료 없이 발급하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지 않거나 수수료 면제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전입신고 사후 확인 및 관리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 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리·통장에게 보내야 하며, 리·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기관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9건의 전입자에 대하여 전입신고 확인서에 거주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는 등 전입자 사후 확인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인감 관련 업무 소홀

-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제1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르면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 공부의 이송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 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증자료가 없어 신분증을 제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감대장을 3일 초과하여 이송하는 등 인감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

- 「농지법」 제7조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동장에게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개정된 농지법 제8조 제2항(2022.5.18. 시행)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가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또한, 「2022.5.18. 및 8.18 시행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및 지자체 업무처리지침(2022.5.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원 총 소유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함에도 검토 없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고,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상 의무기재사항이 미기재되거나 재직증명서를 미제출하였음에도 발급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건설공사 시공자격 검토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및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발주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주요 공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을 숙지한 후 주된 공정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 ○○ ○○공사” 외 1건의 공사를 계약하면서 각 사업별 사업내용이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주된 공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의 계약한 사실이 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미계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하는 총 공사금액(도급액+관급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공사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 ○○ ○○공사” 외 14건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 ○○공사(○ ○)” 외 88건 예정가격 작성 시 환경관리비를 각각 미계상하였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르면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 ○○ ○○공사” 외 2건 공사의 목적 외 청구 청구액 1,231천원을 확인하여 감액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 건설폐기물 처리비 정산 업무 소홀

- 건설 현장 발생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15조(배출자의 신고) 및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1)”, 제9절 “1-가-3)” 에 의거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검사 시에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의 이행내용을 정확히 감독 및 검사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재시공,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 ○○○○ ○○공사” 외 3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서 등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폐기물 처리비 1,847천원을 확인하여 감액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건설공사 추진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1)”, 제9절 “1-가-3)” 에 의거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검사시에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 또는 시공방법에 따라 계약의 이행내용을 정확히 감독 및 검사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재시공,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곤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 ○○○○ ○○공사 외 8건” 을 계약 체결하여 준공처리 하면서 공사중 또는 준공검사 시 정산 조치 없이 준공처리함으로써 공사비 6,717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